

【붙임1】

2024-1학기 국가근로장학생 선발 안내

1. 목적

저소득층 대학생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학업여건을 조성하고,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취업 역량 제고

2. 선발인원: 50명 정도【선발인원은, 추후 변동이 있을 수 있음】

가. 전공 관련 기업 및 교외기관(시설): 25명 정도

※ 전공 관련 산업체 및 교외기관(시설) 신청자 중 장학생 선발기준”에 의거 선정

나. 교내실험·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: 5명 정도

※ 학과 추천 교내 실험·실습시설 및 교내연구소 신청자 중 장학생 선발기준 및 절차’에 의거 선정

다. 교내 도서관 등 : 15명

라. 한국장학재단 홍보지원: 5명

3. 근로조건

가. 근로기간: 2024. 03.04(월) ~ 2024. 08. 30(금)) 까지

나. 근로시간: **주당 20시간 이내(학기당 최대 450시간 이내)**

※ ‘주’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 ~ 일요일(7일)

다. 근로지별 시간 당 근로장학금 지급 기준금액

기준	교내근로	교외근로	비고
시간 당 지급 기준금액	9,860원	12,220원	

※ 지급금액: 실제 근로한 시간 × 시간당 금액

※ 근로기간별 근로종료 후, 근로 기관(시설) 담당자 출근부 승인 및 근로장학기관(대학) 최종 확인, 승인 후 20일 이내에 지급

※ 교외근로는 교내근로보다 시간·경제적 부담이 커 교내근로에 비해 높은 수준의 장학금 지급

라. 제한사항

- 1) 본 근로는 행정보조, 청소 등의 단순근로 및 단순영업, 판매 및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등의 근로가 아니라, 사회 적응력 및 취업 능력 제고에 도움이 되거나, 사회봉사 등 공익에 이바지하는 업무활동이어야 하므로, 국가근로장학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를 장학생에게 부여하고 사전 교육, 지도 및 감독을 통해 업무능력 제고를 지원하여야 함

※ **관리감독 기능이 미흡할 경우, 해당 대학의 교부금 감액 또는 사업 참여배제**

- 2) 근로장학생 선발 시 휴학생, 재학 중 취업자(특히 4학년 조기 취업자), 외국인학생, 산업체 위탁생 등이 선정되지 않도록 반드시 선발 학생의 학적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, 위장근로, 수업시간 중 근로, 해외여행 및 병원입원 중 근로 등의 허위근로에 대한 철저한 관리·감독을 하여야 함

※ **허위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,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**

4. 관련 기관(시설) 및 배정 인원

근로장소		추천 학과 및 부서	선발 인원	비고
교외 근로	○전공 관련 기관(연구소, 시험· 측정기관, 실험·실습시설 등)	해당 학과	25명	전체 국가근로 장학금 대비 41%이상 의무 배정
	○기업(벤처기업, 중소기업, 대기 업 등)	"		
	○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	"		
	○교육기관(유치원·초·중·고 등)	"		
	○사회복지시설(상담센터, 장애 인 복지시설, 사회복지관, 지 역아동센터 등)	학생복지팀		
	○보육시설(어린이집 등)	"		
	○보건의료시설(병원, 보건소 등)	해당 학과		
	○대학 내 입주업체(창업보육센터· 산학협력단 내 입주 기업 등)	학생복지팀		
	○비영리단체 등	"		
교내 근로	○교내도서관 등	"	20명	
	○교내 실험·실습시설, 교내 연구소	해당 학과		
	○한국장학재단 홍보지원	학생복지팀	5명	
<p>※ 근로내용이 단순 행정보조업무, 청소 등의 근로는 제한됨</p> <p>※ 허위근로, 대체근로, 대리근로 및 부정근로 적발 시 해당지원 장학금 전액 반납 및 국가근로장학생 자격박탈</p>				

- ※ 교외기관(기업 및 시설 등)과 근로 장학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산업체와 의무적으로 참여동의서를 승인하여야 함
- ※ 철저한 학적정보, 출근부 관리 및 허위 근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관계로 근로기관(시설) 섭외 시 이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섭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장학생 선발기준

○ 기본조건(공통)

- 사업 기본요건을 갖춘 정규학기 등록(예정)자로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사업 1차 신청자
-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 취득자
- 당해학기 소득분위 9분위 이하인 자

○ 선발 제외자(공통)

- 장학금 신청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- 정학 및 퇴학 등 학사징계를 받은 경우
- 자퇴, 제적 등으로 학생신분을 상실한 경우
- 부정근로 사례가 적발된 경우
-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근무지에서 자격 해제를 요청한 경우
- 대학의 사전 승인 없이 무단으로 근로를 포기한 경우
- 초과학기자(졸업유예자 포함)

○ 우선순위

1. 차상위 및 기초생활수급자
2. 소득분위 1순위- 2순위- 3순위순
3. 동률일 경우

직전학기 평점평균이 높은 자(직전학기 성적 산출 불가 시 최근학기 성적 적용)

○ 대체선발기준

- 미 선발자 중 우선순위에 의거 순차적으로 선발